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 전부개정 공포 시행(2007. 9. 28)으로 「수도법」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업무가 「하수도법」으로 관리·이관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조례를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서 정하기 위함이며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중수도 관련 조항이 「수도법」에서 「하수도법」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신설(안 제7조~제12조)
 -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(안 제7조)
 - 중수도의 관리(안 제8조)
 - 중수도의 용도 제한(안 제9조)
 - 사용량 기준 및 검침(안 제10조)
 - 중수도시설의 관리사항 위반(안 제11조)
 - 중수도의 수질검사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경상북도 하수도 사용 조례」 준칙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수도법」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업무가 「하수도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서 규정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중수도 관련 조항이 「수도법」에서 「하수도법」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신설(안 제7조~제12조)
 -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(안 제7조)
 - 중수도의 관리(안 제8조)
 - 중수도의 용도 제한(안 제9조)
 - 사용량 기준 및 검침(안 제10조)
 - 중수도시설의 관리사항 위반(안 제11조)
 - 중수도의 수질검사(안 제12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수도법」에서 관리하던 중수도 업무가 「하수도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정비하기 위하여 조문 변경 및 신설한 안으로 중수도 업무의 적정관리를 도모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